개인 출입자 서약서

본인은 본인에 관한 정보(소속회사, 이름, 생년월일, 전화번호 등)를 업무 소관부서에 제출하여 본인확인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, 하나은행 본점(또는 부속사옥) 출입권한을 부여 받음에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다 유 -

- 1. 귀행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인지하거나 습득한 정보를 귀행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.
- 2. 출입즁을 분실(출입권한이 부여된 개인카드 포함)했을 때에는 즉시 안전관리부로 신고하며, 지연 또는 미신고로 인하여 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,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- 3. 본인 신분상의 변동이 있거나 또는 업무상 출입권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에 신고하여 소관부서 에서 안전관리부로 권한변경 또는 해지를 공문으로 요청하도록 한다.
- 4. 본인은, 출입권한을 부여받아 귀행을 출입하면서 귀행에 인적,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금 전액을 즉시 배상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.
- 5. 귀행에 출입 시 부여받은 출입증(개인카드 및 은행 소유분의 출입증, 방문증 전체 포괄함)을 반드시 소지하며, 은행 소유분의 출입증 및 방문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1만원의 분실대금을 지급한다.

년 월 일

업 체 명:

생년월일:

성 명:

전 화:

확인부서	

확인자 (인)

본 인 확 인

하나은행 안전관리부장 귀하

(0|)



ㅎ 하나은행

5-99-0028(1-1) (2024.06 개정) (보존년한 : 작성일로부터 5년)